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7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최혁진·복기왕·민형배
김기표·김우영·김정호
김준형·정혜경·김준혁
김종민·김영배·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조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u> 가.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조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 <u>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 <u>사회적기업 육성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 <u>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u> 」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마. 「 <u>협동조합 기본법</u> 」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

③ ~ ⑤ (생 략)	<u>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 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